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유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하거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2010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무역에 관한 기본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깊고 오랜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를 심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연합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신규 및 신생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와 노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2022년 11월 28일에 서명된 한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이하 “디지털 파트너십”이라 한다)을 인식하고,

한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의 핵심 성과로서, 개방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고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통의 틀을 제공하는, 2022년 11월 30일에 서명된 한국–유럽연합 디지털 통상 원칙(이하 “디지털 통상 원칙”이라 한다)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은 기준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며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양 당사자의 결합된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회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보다 넓은 접근을 인식하며,

양자 특혜 무역 관계의 맥락 내에서, 신규 및 신생 분야에서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할 것을 결의하고,

전반적인 관계의 일부로서 그리고 이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자 특혜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을 결심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인식하며,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통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조력자이자 그들 경제의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의 기여자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 규칙은 미래에도 유효하고 혁신 및 신생 기술의 등장에 반응해야 할 것임을 고려하며,

자유무역 협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따라 경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것과,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보호 및 관련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국제 협정을 유념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상의 디지털 무역을 증진할 것을 결심하며,

디지털 무역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불균형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의 디지털 포용을 증진하는 동시에, 특히 여성 기업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상호운용성, 혁신, 경쟁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세계 경제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 협정에 반영된 관련된 양 당사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응하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을 추구하고,

정당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그들의 영역 내에서의 양 당사자의 규제 권한을 확인하며,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무역에서의 야심찬 기준, 규칙 및 표준 수립을 추구하는 양 당사자의 국제적 및 지역적 리더십 역할을 보완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표현된 원칙을 고려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WTO 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및 양자 협정과 협력을 위한 국제 문서상의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기본협정의 체계 내에서 적용되며,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 라 한다) 제24조(영역적 적용 – 국경무역 –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 라 한다) 제5조(경제통합)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구현 가능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시청각 서비스
 - 나.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수행되는 활동, 그리고
 - 다. 제16조(정부 데이터 공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 또는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는, 그러한 데이터와 관련된 조치¹

제3조 규제 권한

양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공중 보건, 사회 서비스, 공공 교육, 안전, 환경 또는 공중 도덕의 보호, 사회 또는 소비자 보호,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및 보호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규제 권한을 재확인한다.

제4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정부권한행사로 수행되는 활동” 이란 상업적 기초에서 행해지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하에 행해지지도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나.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하며, 최소한 전자 메일, 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SMS와 MMS), 그리고 당사자의 법 또는 규정에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유형의 전자 메시지로 구성된다.²
- 다. “소비자”란 직업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라.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에 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요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정의는 비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규제하는 한국의 능력과 무관하다.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전자송장” 이란 공급자와 구매자 간 전자 송장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바. “전자송장 문서” 란 자동적이고 전자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발행, 전송 그리고 수신된 송장 문서를 말한다.
- 사. “전자지급” 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인에 대한 금전상 청구권의 이전을 말한다. 다만,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의 결제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지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 아. “전자 등록 배달 서비스” 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당사자 간 데이터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전송된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손실, 도난, 훼손 또는 승인되지 않은 변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자. “전자서명” 이란 전자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차. “전자적 전송” 이란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한 전송을 말하며, 그 전송의 내용을 포함한다.
- 카. “최종이용자” 란 인터넷 접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타. “금융서비스” 란 자유무역 협정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2항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파. “정부 데이터” 란 모든 수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³

- 하. “법인” 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⁴
- 거. “조치” 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 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너. “당사자의 조치” 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 그리고
 -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 더. “개인 데이터” 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⁵
- 리. “서비스” 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며. “서비스 공급자” 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버.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란 GATS 제1조제3항다호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1항나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이해된다.

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포함한 법인의 모든 형태의 상업적 주체는 이 협정상 법인의 상업적 주체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개인 신용 정보를 포함한다.

말한다.

- 서. “영역” 이란 각 당사자에 대하여, 제39조(영역적 적용)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사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 저.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제2장 디지털 통상 규율

제1절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동

제5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1.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각 당사자가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당사자의 영역에서 인증되거나 승인된 컴퓨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요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요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

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저장 또는 처리를 금지하는 것

라. 당사자 영역에서의 컴퓨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요소의 사용, 또는 당사자 영역에서의 현지화 요건을 조건으로 국경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마. 당사자 영역으로의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것, 또는

바. 다른 쪽 당사자 영역으로의 데이터의 전송에 앞서 당사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⁶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⁷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 또는 컴퓨터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바호는 당사자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지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인 전송 수단의 사용 또는 특정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이 제6조에 따른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근거에 따라 승인되도록 하는 것

나. 이 조 제3항 및 제6조제4항, 제27조(건전성 조치 예외), 제28조(일반적 예외), 그리고 제29조(안보 예외)에 따라, 이 협정에 합치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이버보안 목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의 상용화 또는 사용 전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서비스 및 과정의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다. 제28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이 협정에 합치되는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서 기인한 지식재산권 또는 비밀유지 의무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체가, 제3국의 법원 및 당국의 접근 요청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국경 간 전송할 때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

⁷ 이 조의 목적상,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는 객관적으로 해석되며, 공공 안보, 공중 도덕 또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공공 질서 유지, 온라인 안전, 사이버보안,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과 같은 그 밖의 사회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 또는 허위 정보 유포로부터의 보호, 또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유사한 공공 이익 목표와 같은 목표에 대한 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설비의 사용이나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조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금융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에 적용된다.⁸ 제2항 가호부터 라호까지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을 이행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 2. 5.)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2제7항에 규정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⁹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예외의 해석과 이 조에 대한 그러한 예외의 적용, 그리고 그러한 예외를 원용할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양 당사자는 이 조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내에 이 조의 기능을 평가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2항에 열거된 제한 목록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제6조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1. 양 당사자는 개인이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높은 기준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무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개인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적법성, 데이터의

⁸ 양 당사자는 제3조(규제 권한)에 따라, 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고 감독할 자신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⁹ 이 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는 한국 영역 밖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든 형태의 금융 데이터 전송을 금지할 수 없다.

질, 목적 명기, 수집 및 사용 제한, 데이터 보유의 제한, 데이터 보안, 투명성, 책임, 접근·정정·삭제와 같은 개인의 집행 가능한 권리, 독립적 감독과 효과적인 구제와 같은 핵심 원칙에 대하여 관련 국제 기구가 개발한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각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자신의 법 체계가 개인에게 비차별적인 개인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법이 전송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¹⁰하에 그러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규정해야 한다.

6. 각 당사자는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린다.

7. 각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안내를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8.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특정 규정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불특정 다수의 경제운영자에게 수평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포괄하는, 객관적인 용어로 구성된 조건을 지칭한다.

제7조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1. 어떠한 당사자도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당사자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8조 사전 승인 금지

당사자는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¹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 전자 계약

각 당사자는 계약이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법이 전자 계약의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계약이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의 법적 효력 또는 법적 유효성이 부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¹²

1. 당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

¹¹ 서비스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당사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전자적 데이터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았음을 표시하거나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더 큰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서 또는 전자서명의 법적 절차에서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부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 또는 전자서명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의 방법이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인증될 것 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면서 관련된 특정 범주의 거래의 구체적인 특성에만 관련되는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전자 인장, 전자 타임스탬프 및 전자 등록 배달 서비스에 적용한다.

5. 양 당사자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6. 양 당사자는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

제11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자신의 영역에서 또는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수출,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가. 제27조(건전성 조치 예외), 제28조(일반적 예외) 및 제29조(안보 예외)는 인증 절차의 맥락에서 채택되거나 유지된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
- 나. 제1항은 공공 조달 거래 또는 그 밖의 자유롭게 협상된 계약의 맥락에서와 같은 상업적 기반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자발적인 이전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의 허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다. 제1항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당사자의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규제 당국, 법 집행 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¹³를 추구하는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수사 또는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의 목적상, 소프트웨어의 수입, 수출, 유통, 판매 또는 사용 전이나 후에 그러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규제 당국,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¹⁴의 권리
- 나. 경쟁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당사자의 법원, 행정재판소, 경쟁 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요건, 또는 디지털 시장이 경쟁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비례적이고 선별적인 접근

¹³ 이는 제5조(국경 간 데이터 이동)제3항 각주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¹⁴ 이 조의 목적상, “적합성 평가기관”은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합치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정부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 당사자의 관련 정부 기관, 기구 또는 당국, 또는 비정부기관을 지칭한다.

을 제공하는,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당사자의 법 또는 규정에 따른 요건

- 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또는
- 라.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제12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신용을 향상시키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오도적이며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는 것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신의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신원 및 연락 세부사항¹⁵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라.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중에 상품의 안전과,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것

¹⁵ 중개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이는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공급자의 신원 및 연락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나 합의된 바와 같이 배달되거나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 권리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그들의 권리 를 주장하기 위한 피해 구제 또는 청구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3.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오도적이며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가격, 목적에 대한 적합성, 수량 또는 원산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묵시적인 허위 표시 또는 거짓 주장을 포함하여 중대한 허위 표시¹⁶를 하는 것

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의도나 합리적인 역량 없이 그에 대한 공급 광고를 하는 것

다. 합리적인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달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4.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부여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5. 양 당사자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들 각자의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적절한 집행력을 위임하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6.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비자 보호법 및 규정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¹⁶ 이 조의 목적상, “중대한 허위 표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표시를 지칭한다.

7.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3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양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¹⁷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나. 각 당사자의 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맥락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법에 따라 수신자의 연락 세부사항을 수집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하여 그 수신자에게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한다.¹⁸

3. 각 당사자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가 그 자체로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그 메시지가 누구를 대신하여 발송되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수신자가 언제든지 무료로 그러한 메시지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피해 구제 또는 청구 수

¹⁷ 이 조의 목적상, 수신자와 관련하여 연합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수신자와 관련하여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자연인과 법인에 적용된다.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법에 정의된 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후 일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러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5. 양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디지털 무역 사안에 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신규 및 신생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와 노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전문위원회)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련 협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다루는, 디지털 무역 맥락에서의 규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인정 및 촉진 그리고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

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취급

다. 소비자 보호

라. 국경 간 물류에 대한 우수 관행 및 정보, 그리고

마. 디지털 통상 원칙에 언급된 사안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경 간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양 당사자의 규칙 및 보호장치에 대한 규제 협력은 제6조(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의 적용을 받는다.

제15조 개방형 인터넷 접근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최종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불공정한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는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비례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최종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¹⁹
- 나. 최종이용자가 선택한 장치가 그 밖의 장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또는
- 다.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6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양 당사자는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생산성 그리고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¹⁹ 제1항가호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자신의 최종이용자에 대해서만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원칙에 반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2. 당사자가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정부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쉽게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한 형식이다.

나.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관련된 경우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 가능한 한 표준적인 메타데이터를 수반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이용자 친화적이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마.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바. 차별적이거나 재사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 적절한 익명화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재사용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다.

3.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분야의 정부데이터 사용을 넘어 그 당사자가 공개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전자송장

1. 양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거래 및 조달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체계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체계의 상호운

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전자송장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가 양 당사자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고안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들을 고려한다.

3. 양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송장에 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계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데 협업한다.

나.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 장려,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협업한다.

다.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기초가 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증진한다.
그리고

라.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18조 종이 없는 무역

1. 상품 무역을 위한 종이 없는 국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종이 양식과 문서를 없애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종이 양식과 문서를 적절히 없애고 데이터 기반 형식의 양식과 문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장려된다.

2. 각 당사자는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과 문서를 대중에

게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²⁰

3. 각 당사자는 전자적 형식으로 제출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과 문서를 그 양식과 문서의 종이본과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과 문서의 전자본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단일창구

1. 각 당사자는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제10조제4항 1호에 따라 자신의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때 자신의 영역을 통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접수지점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위험 관리와 세관 통제의 효과를 개선하고 세입 징수 또는 안전 및 보안 측면에서 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정당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히 그리고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관세 관련 정보를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자의 관세 당국 간 구조화되고 반복적인 전자적 통신을 통하여 교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을 발전시킨다.
3.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 가. 이 조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 나. 이 조의 공동의 목적과 적절한 적용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결

²⁰ 이 항의 목적상, “전자적 형식”이란 용어는 디지털화된 이미지와 양식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해석과 인간의 개입 없는 전자적 처리에 적합한 모든 형식을 포함한다.

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관세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을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제15.1조(무역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채택이 될 결정을 또한 제안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며, 양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인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을 강화하고 전자지급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전자지급 서비스의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비용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국경 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의 유익함

- 나. 적절한 경우 전자지급 시스템의 위험성을 고려한 법과 규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접근 가능한 전자지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 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비용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전자지급 상품 및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규제 또는 면허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내린다.
- 나.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 표준을 고려한다.
- 다. 전자지급에서 상호운용성의 증대, 경쟁, 보안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여 그들의 금융 상품, 서비스 및 거래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하며 이는 적절한 위험 관리를 조건으로, 제3자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법으로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 및 서비스의 시의적절한 도입을 촉진한다.
3. 각 당사자는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각자의 법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한다.

제21조 사이버보안

1. 양 당사자는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되며 그에 대한 위협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사이버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을 인정한다. 그러한 위협을 확인하고 완화하며, 이로써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그들 각자 국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자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확인하고 완화하며, 사이버보안 사고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인식에 대한 정보와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데 협업한다.

3. 사이버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과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양 당사자는 무역 장벽은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위협을 다루는 데 위험기반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보호하며 사이버보안 사건을 적발하고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하며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위험 관리 우수 관행과 합의 기반의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개발된 표준에 의존하는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영역 내의 기업이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22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1. 이 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는 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한다.
3.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국제 표준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기관이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포럼의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디지털 경제의 상호 관심 있는 신생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규제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에 대한 국제 인정 협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디지털 경제의 상호 관심 있는 신생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5. 이러한 목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거나 그들 각자의 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장려한다.

6.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정보 교환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무역협정 제4.4조에서 제4.6 조까지에 따른 투명성 관련 그들의 약속을 확인한다. 디지털 경제의 상호 관심 있는 신생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정보 교환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 각자의 기관이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과 디지털 무역이 그러한 실체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이 조를 이행하는 데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3.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기회에 대한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디지털 포용

1. 양 당사자는 모든 인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기회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데 불균형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인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사안에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 간 의견 교환을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나. 디지털 무역 기회에 대한 접근 장벽을 확인하고 다루는 것

다.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데 불균형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인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라.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한 그 밖의 분야

3.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협력 활동은 적절하게 양 당사자 각자의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서 디지털 포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기 위하여 WTO 및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이자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이 협정의 혜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당사자가
여기는 추가적인 정보
2.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하다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
능하도록 노력한다.

제26조 이해관계자 참여

1. 양 당사자는 기업, 비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 간에 이 협정에 따른 디지털 무역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맥락 내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과 양 당사자 내 및 양
당사자 간 적절하게 관련 이니셔티브 및 플랫폼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적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노력과 추가적인 현대화의 목적상, 기업, 비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같은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다.

제3장 예외, 분쟁해결, 제도 및 최종 규정

제1절 예외

제27조

건전성 조치 예외

1.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²¹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나.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의 보장

2.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소비자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8조

일반적 예외

자유무역협정의 제2.15조(일반적 예외) 및 제7.50조(예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29조

안보 예외

자유무역협정의 제15.9조(안보 예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²¹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0조
국제수지 예외

자유무역 협정의 제15.8조(국제수지 예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31조
과세

자유무역 협정의 제15.7조(과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2절
분쟁해결

제32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유무역 협정 제14장(분쟁해결) 및 그 장의 부속서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협정의 제7.45조(분쟁해결)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 규정된 중개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

특명성

비밀 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자유무역협정 제14장(분쟁해결)의 규정을 보완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을 신속하게 공개한다.

- 가. 자유무역협정 제14.3조(협의)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 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중재절차 개시)제2항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
- 다.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제4항에 따른 패널 설치일,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기한 및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패널 절차를 위한 작업 언어
- 라. 패널 절차에서 제공된 서면입장 및 진술, 그리고
- 마. 자유무역협정 제14.13조(상호 합의된 해결)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했다는 정보. 연합의 정책은 그러한 문서를 공개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양 당사자는 비밀 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자유무역협정 제14.13조(상호 합의된 해결)에 따라 도달한 상호 합의된 해결을 또한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다.

제3절 제도 규정

제34조 제도 규정

- 1. 자유무역협정 제15.1조(무역위원회), 제15.2조(전문위원회), 제15.4조(의사결정) 및 제15.5조(개정)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통상 작업반을 설치한다. 디지털 통상 작업반은 제19조(단일창구)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당한다.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작업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3. 디지털 통상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적절한 급에서 회합한다. 한국과 연합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디지털 통상 작업반은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4. 디지털 통상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디지털 통상 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디지털 통상 작업반의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4절 최종 규정

제35조 정보의 공개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법에 따라 비밀로 여겨지는 정보를 디지털 통상 작업반, 무역위원회 또는 관세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36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3. 통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과 유럽연합 이사회 사무국에 송부된다.

제37조 존속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 의무이행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반 또는 특정 조치를 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2. 당사자는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이 협정의 폐기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 연합의 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 또는 연합 간의 이전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는다.
2. 자유무역협정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6절(전자상거래)은 적용이 중단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제7.46조(인정)를 포함하여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5절(규제의 틀) 제5관(금융서비스)은 그 협정 제7.37조(적용 범위 및 정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조치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기본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 규율하는, 한쪽 당사자인 한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기본협정의 의미 내에서 무역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특정 협정을 구성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WTO 협정에 따른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40조 직접효 금지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공법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창설된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제41조

영역적 적용

이 협정은

-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의 영역에 적용된다. 그리고
- 나. 연합에 대하여,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들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 협정에서 “영역”이라는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

제42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